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68호 2020. 11. 30.(월)

훈 령

-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2

공 고

-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
-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2기 참여자 모집공고----- 31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훈령 제828호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0년 11월 30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하 “우수공무원”이라 한다) 등을 선발한다.

제3조(선발대상) 우수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 중에서 선발한다.

1.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
2. 창의적, 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등
3. 그 밖의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

제4조(추천) 시장은 우수공무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1. 국민이 적극행정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정책사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
2. 각 부서장이 적극행정 공무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

제5조(선발제한) 우수공무원 추천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및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4. 기타 공·사의 생활로 인해 민원 등을 야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선발 절차와 기준) ① 우수공무원 등은 실무심사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②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우수공무원 등의 선발 및 등급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한다.

③ 우수공무원 등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실적검증) ① 조사업무 담당 팀장과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자별로 제출한 서류검토, 사실관계 및 선발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실무심사 시 첨부한다.

제8조(실무심사) ① 실무심사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구성된 조사업무 담당 팀장, 기획업무 담당 팀장,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 인사업무 담당 팀장 등이 실시한다.

② 심사기준은 심사평가표(별지 제5호)에 따라 평가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대상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정된 우수공무원 등의 선발, 등급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우수공무원 등 선발 심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 결과 동점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우선순위 지표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 등의 등급과 등급별 인원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및 인센티브 부여) ①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을 인사부서에 알리고,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시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선정된 우수공무원 등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의 선발 심사기준 및 우선순위*(제6조 관련)

심사기준	배점	주요내용
합계	100	
창의성·적극성·전문성	25	○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창의성·적극성·전문성 등을 평가
적정성	25	○ 사전컨설팅, 행정협업 등 적극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활용하여 애로점을 해결한 실적
업무난이도	20	○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과제, 첨예한 이해갈등의 정도가 큰 사안의 정도
적시성	15	○ 선제적 해결 또는 혁신·창의적 해법 제시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진 정도
시민체감도	15	○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정도

*우선순위 : ① 창의성·적극성·전문성 ② 적정성 ③ 업무난이도 ④ 적시성 ⑤ 시민체감도

【별표 2】

인센티브 부여(제6조 및 제9조 관련)

인센티브 종류	등 급			비 고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부여	S등급	S등급	S등급	
교육 훈련 우선 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인사상 가점 부여	최대 0.3점	최대 0.2점	최대 0.1점	
포상 휴가	최대 3일	최대 2일	최대 1일	
포상금	최대 5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우수공무원 선발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

※ 인센티브 부여시 인사운영 여건을, 포상금 지급시 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목포시 적극행정 국민추천(서식)

추천인	성명 또는 단체명*	
	휴대전화*	
피추천인	부서*	
	성명 또는 정책명*	
적극행정 유형*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변화에 전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해당유형에 √		
추천제목*		
추천내용*		

【유의사항】

- 피추천인의 성명 및 부서, 추천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소속),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 부서(부서추천 시 부서명만 기입)
 - 적극행정 유형 및 내용 : 해당 유형을 선택 후, 추천 제목 및 내용 서술
- 피추천인의 성명 및 추천내용 등은 해당자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 및 선발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해 추천인과 피추천인(후보자)의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추천인 : 성명(소속), 관계(피추천인과의),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 소속, 추천제목, 추천내용
- 선택항목 : 이메일(추천인)

나. 수집방법 :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경우 ☒ 표시)

☐ 예 ☐ 아니오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 추천

추천부서	부서명	업무 담당	(성명) ☎
추천대상	성명 직위(직급)	☎	
적극행정 유 형 *해당유형에✓	☐ 규제혁신 ☐ 민원갈등 해결 ☐ 공공서비스 질 향상 ☐ 행정효율 향상 ☐ 새로운 정책 발굴 추진 ☐ 기타	희망 인센티브	
추천제목			
추천내용	※ 내용은 개조식으로 10줄 내외 작성(맑은고딕 10) ※ 제출서류 : 붙임2 및 증빙자료 1. 창의성, 적극성, 전문성 (25%) ○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이 주도적으로 발휘되었는지 등을 기술 - 창의성·전문성 : 타시군사례와 중복되는지 여부,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 - 적극성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 이상을 투입했는지 2. 적정성 (25%) ○ 사전컨설팅, 행정협업 등 적극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활용하여 애로점을 해결하는 등 추진 실적 기술 - 사전컨설팅 신청여부 - 적극행정을 위한 조례, 규칙, 규정 등 제정 및 개정 여부 - 행정협업 : 협조공문 발송 내역 3. 업무난이도(20%) ○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과제, 첨예한 이해갈등의 정도가 큰 사안 등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기술 - 해당업무 자체 진행기간 - 이해갈등의 정도가 큰 사안 : 다수의 시민 혹은 시민단체 등 반대여부 4. 적시성(15%) ○ 선제적 해결, 또는 혁신·창의적 해법 제시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진 정도를 기술 - 예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언택트관련 정책 개발 5. 시민체감도(15%) ○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 : 국가전체, 지역전체, 지역일부 - 수혜인원 : 00명 - 재정 수입증대액 : 00원		

년 월 일

추천(실·과장)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우수사례 제출 서식(4페이지 이내 작성)

제 목				적극행정 유 형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해당사례 입상여부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선택한 적극행정 유형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 추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업 무 담 당 자	주담당 (기여도: 00%)	실무상 어려움			
		해결 노력	‘업무담당자’ 분량은 1쪽 엄수		
		기타 에피 소드	※ “내가 생각하는 적극행정이란?(ex. 적극행정이란 OOO다.)”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에피소드 등 자유롭게 작성		
	협조자1 (기여도: 00%)	기여한 내용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협조자 없을 시 미작성)		
	협조자2 (기여도: 00%)	기여한 내용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협조자 없을 시 미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업무실적 조사서

□ 사례명 :

□ 평가대상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 사실관계 검토의견

주요 검토내역(예시)

- 성과가 추천대상자의 실적이며, 주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 성과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과대(또는, 과소)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 추진배경, 본인의 역할, 추진과정, 결과 등이 사실과 같은지?

미확인 내용

- 제출한 내용 중 직 · 간접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내용 기재

□ 제외대상 여부

주요 검토내역(예시)

- 추천제한 여부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및 징계기록에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공 · 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확인자 조사업무 담당 팀장 성 명 (서명)

확인자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 성 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심사평가표 (실무심사, 위원회)

1. 평가 대상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2. 평 가

심사항목 (배점 100)	심사적도	심 사 내 용
창의성·전문성·적극성 (25)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이 주도적으로 발휘되었는지 등을 기술
점수()	▶매우우수 20-25 ▶우수 14-19 ▶보통 8-13 ▶미흡 5-7 ▶매우미흡 1-4	- 창의성·전문성 · 타시군사례와 중복되는지 여부 · 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 - 적극성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 이상을 투입했는지
적정성 (25)	▶매우우수 20-25 ▶우수 14-19 ▶보통 8-13 ▶미흡 5-7 ▶매우미흡 1-4	사전컨설팅, 행정협업 등 적극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활용 하여 애로점을 해결하는 등 추진실적
점수()		- 사전컨설팅 신청여부 - 적극행정을 위한 조례, 규칙, 규정 등 제정 및 개정 여부 - 행정협업 : 협조공문 발송 내역
업무난이도 (20)	▶매우우수 16-20 ▶우수 12-15 ▶보통 8-11 ▶미흡 4-7 ▶매우미흡 1-3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과제, 첨예한 이해 갈등의 정도가 큰 사안 등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기술
점수()		- 해당업무 자체 진행기간 - 이해갈등의 정도가 큰 사안 · 다수의 시민 혹은 시민단체 등 반대 의사 존재 여부
적시성 (15)	▶매우우수 13-15 ▶우수 10-12 ▶보통 7-9 ▶미흡 4-6 ▶매우미흡 1-3	선제적 해결, 또는 혁신·창의적 해법 제시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진 정도를 기술
점수()		- 예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언택트관련 정책 개발
시민체감도 (15)	▶매우우수 13-15 ▶우수 10-12 ▶보통 7-9 ▶미흡 4-6 ▶매우미흡 1-3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
점수()		- 대상 : 국가전체, 지역전체, 지역일부 - 수혜인원 : 00명 - 재정 수입증대액 : 00원
총점(점)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

부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에 체크(√) 표시

인센티브 종류	등 급			비 고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부여	S등급 ()	S등급 ()	S등급 ()	
교육 훈련 우선 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	
가점 부여	최대 0.3점 ()	최대 0.2점 ()	최대 0.1점 ()	
포상 휴가	최대 3일 ()	최대 2일 ()	최대 1일 ()	
포상금	최대 5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가 선정한 인센티브를 인사업무부서에 통보
- ※ 우수공무원 선발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포상금 지급시 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심사평가표 총괄표 [실무심사]

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을 아래와 같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합니다.

□ 총괄표

사례제목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 결과	
				총점	순위

. .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심사평가표 총괄표 [위원회]

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을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 총괄표

사 례 명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결과		등급 (최우수, 우수,장려)	인센티브
				총점	순위		

【별지 제9호 서식】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심사 결과통보

□ 평가결과 및 포상내역

사 례 명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장려)	포 상 내 역

목포시 공고 제 2020 - 1777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시행규칙의 불일치 조항 현행화
- 조례상 근거 없는 특정기관(군부대)의 연체금 감면 조항 폐지

3. 주요내용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불일치하는 시행규칙 조항 및 조문 정리(안 제4조 내지 제34조)
- 군부대 연체금 감면 조항 삭제(안 제28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19. 4. 29.)

4. 관련법규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 없음

6.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 : 별첨**7. 신 · 구조문 대조표 : 별첨****8.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30. ~ 2020. 12. 21.(21일간)****9. 의견제출**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 ☎ 061)270-8519 / Fax 061-270-8656 / 이메일 bling007@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9조 중 “제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3조제4항”을 각각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이로갈”을 “일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23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제8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를 “제5조, 제20조,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배수, 설비설치 신청) ①조 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 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 설비설치 신청) ①--- - 제13조-----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 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 자 할 때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9조 (공사 신청의 취하) -- 제13 조제1항----- ----- ----- -----.
제11조 (공사비의 산출) ①조레 제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 결정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11조 (공사비의 산출) ①---- 제1 3조제3항----- ----- ----- -----.
②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 음 각호와 같다.	②----- -----.
1.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 0분의 5	1. --- 제16조 ----- ----- -----.

2. · 3. (생 략)

제12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조
레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
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
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레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조레 제3조제4항에 의한 공사취
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기
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
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의 시공) ①조레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
사 라 함은 다음 각호이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
수시설
3. 안지름 300mm이하의 연장 3m미
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등

2. · 3. (현행과 같음)

제12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 제13조제5항-----

②-- 제13조제5항-----

③-- 제13조제5항-----

<삭 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③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삭 제>

배수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5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행관계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

<삭 제>

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하자보증금은 목포시에 귀속된다.

⑤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사

실이 발견되었을 때

6. 동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을 받는 공사

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기타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
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의 시
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
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
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
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의 공공하수도 사용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삭 제>

제1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제5조제1항-----

----.

②-- 제5조제1항제3호 -----

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④ (생 략)

⑤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일시 사용허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

제21조 (사용료 고지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5조제1항제2호-----
-----.

제18조 (일시 사용허가) -- 제6조--

-----.

제20조 (자료제출 명령) -----

-----.

1. --- 제5조-----

2. --- 제20조제1항-----

3. --- 제21조제2항-----

4. --- 제26조-----

제21조 (사용료 고지등) ① -----

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목포시급수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시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

제21조의2 (원인자 부담금) ①시장은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생 략)

제22조 (점용허가 신청) ① (생 략)

②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 ----- 제5조제1항-----

-----.

②-- 제18조제1항-----

-----.

③----- 제18조제3항-----

-----.

제21조의2 (원인자 부담금) ①-----

----- 제22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점용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

-----.

다.

제24조 (사용료의 조정) ① (생략)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이로갈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자

2. · 3. (생략)

제27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 (사용료 등 감면)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24조 (사용료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괄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제25조-----

2. · 3. (현행과 같음)

제27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 제2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제25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3. 2 규 1287)

⑤ (생 략)

제34조 (증표) 조례 제8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 (증표) --- 제5조, 제20조, 제33조 -----

목포시 공고 제2020-1814호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2기 참여자 모집공고

맛의도시 목포에 오면 꼭 먹어보고 구매해야하는 특색있는 주전부리 개발완료에 따른 상품화를 위하여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2기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목 포 시 장

1. 모집개요

- 모 집 명 :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2기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20. 11. 30.(월) ~ 12. 4.(금) (5일간)
- 신청대상 : 목포시에서 주전부리 생산·판매하려는 자
- 모집인원 : 총 15명 내외
- 참 여 비 : 무료
- 지원내용 : 목포 주전부리 3종에 대한 기술전수 교육

- 일 시 : 2020. 12. 8.(화) 14:00 ~ 17:00
- 장 소 : 목포과학대학교 진리관2, 2층 200호(제과제빵실습실)
- 메 뉴 명 : 목화솜빵, 비타다쿠아즈, 맛김새우칩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등기우편)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3층
 - (이메일) : dkdlel6541@korea.kr
- 제출서류 :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2기 참여 신청서 [별지1 서식]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목포 주전부리 개발 및 상품화

○ 사업목적

-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공간에 전주한옥마을, 서울명동처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목포만의 주전부리 부족
-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메뉴선정으로 목포에 오면 꼭 먹어보고 구매해야할 주전부리 개발 추진

○ 사업내용

- 목포 주전부리 3종 개발완료

목화솜빵	비파다쿠아즈	맛김새우칩
		
빵반죽 안에 팔고물과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 충전된 빵	크림치즈와 비파잼을 이용하여 당도를 줄여 남녀노소 거부감 없이 즐기는 프랑스식 디저트	목포의 수산물을 이용하여 반죽에 김을 섞고 건새우를 반죽 위에 올려 구워 만들

- 목포 주전부리 3종에 대한 기술전수 교육 및 향후 홍보 지원

3. 선정방법

○ 접수 서류에 대한 심사 후 선정

※ 서류심사 기준

- 1순위) 주전부리 생산 및 판매장소 구축 여부
- 2순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제과제빵 자격증 여부
- 3순위) 접수순

4. 선정결과

○ 최종선정 후 개별통지 : 2020. 12. 7.(월)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관광과 (☎270-8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접수번호 :)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2기 참여 신청서

신 청 자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휴대폰)_____ (자택)_____		
기타사항	■ 목포시에 영업신고 한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있습니까? (업소명)_____ (업종) _____ (소재지)_____ (전화번호)_____		☐ 예 ☐ 아니오
	■ 데크오븐 또는 컨벡션오븐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교육 참여후 생산하여 판매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2기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시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목포시는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자 합니다.
-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업소현황 등
- ☐ 이용범위 : 「목포 주전부리 레시피 기술전수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선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처리 위탁 : 목포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의 자 성 명 : (서명 / 인)